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1. 4.(월) 11:00,
(지면) 2024. 11. 5.(화) 조간

배포 2024. 11. 4.(월) 06:00

해수부, 여객터미널 지진 피해에 대비한다...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 해수부, 11월 5일(화) 지진분야 비상대처수립대상 항만시설물 개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5일(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 최초 고시할 당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개소,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개소로 총 24개소였다. 금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총 29개 시설(국제여객터미널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 20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전총남 (044-200-5950)
		담당자	사무관	서동현 (044-200-5972)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

구분	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시설	관리주체	비고
계	29			
국제여객터미널	9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동해·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여객터미널	20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여수항 연안여객터미널 여수엑스포 여객선터미널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흑산도항 여객터미널 포항항 연안여객터미널 울릉항 연안여객터미널 거문도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통영항 연안여객터미널 대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녹동신항 연안여객터미널 나로도항 연안여객터미널 홍도항 연안여객터미널 땅끝항 연안여객터미널 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